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776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백혜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정덕, 허훈무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출급채권에 관하여 2020. 4. 14.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13. 12. 1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합계 333,96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료 채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49382호로 분양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5. E은 C에 분양대행수수료로 640,225,325원과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E은 2018. 5. 11. 이 법원 2018년 금제11808호로 피공탁자를 C 또는 F 주식회사로 하여 686,111,062원(위 나.항 판결에 따른 640,225,325원과 2018. 5. 11. 기준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돈)을 혼합공탁하였고, 이 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F은 2020. 2. 14. 공탁금에 대한 권리포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법무법인 G는 C을 상대로 2016년 8월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56,339,828원을 주장하며 이 법원 2020카단803760호로 2020. 3. 13. C이 가지는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고, 이후 C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4. 23.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이 법원 2020카기50559).

마. C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20. 4. 17.경 그 담보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4.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하였다(4. 21. 송달됨).

바. C은 2020. 6. 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978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20타채61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2. 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C에 대한 채권자인 I은 2020. 7. 7. 이 법원 2020가합320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1. 18. 아래와 같은 취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한 이후인 2022. 1. 11. I은 소송을 취하하였다.

○J는 2000. 6.경부터 C을 비롯한 H, K, L, M, N 등의 회사(이하 'C 등 법인들'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건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였다(이하 J와 J가 운영하는 C 등 법인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J 측'이라 한다). ○I은 법무사로서 J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O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J의 형사소송 및 J 측과 I 간의 민사소송에서 J 측을 대리하였다. ○J는 2010. 11. 15. I에게 그동안의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2010. 11. 15.까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2억 8,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I과 J 측에서 민사상, 형사상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J는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대체로 J 측이 패소하였다.○J는 구미시가 추진하는 구미 P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Q(R, S 실질 운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기로 하여 투자금 20억 원을 마련하고자 (앞서 본 마.항 기재와 같이) C, H가 2020. 4. 14.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 차용약정을 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4. 17. 4억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C 등이 2020. 4. 16. J가 2월경 새로 설립한 T과 대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C은 T이 위 사업 중 공동주택 부분 51%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사업정산할 때 대여 및 투자한 돈의 배액을 받기로 하였다. T은 2020. 4. 20. S의 주식 51%를 양도받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S에 위 사업에 관한 투자금 반환 등을 요청하여 12. 11. 12억 7,000만 원, 2021. 2. 19. 7억 3,000만 원을 받았다.

○C은 2017. 4. 5.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일한 자산이었다.

○I은 C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I은 J 측과 제2차 내지 제3차 합의를 체결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함으로써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I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0. 4. 14. 당시 686,111,062원 상당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I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및 법무법인 G에 대한 56,339,828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C이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위 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I이 약정에 따라 10억 원을 제대로 투자하였다면 J 측의 I에 대한 채무 변제와 C의 채무변제력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I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 T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T이 해당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C과 T은 모두 J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T에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I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 I은 C, J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12.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455)에서 C 등이 I에게 투자금 상당인 10억 원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나, 2013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3. 2. 소송을 제기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C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 C은 원고를 상대로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22가단5179539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3, 4, 10, 12, 13, 14, 17, 18,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해 2016. 7. 27. 기준 333,965,500원 상당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124,185,500원을 변제받아 2억 978만 원(=광고대행 용역비 333,965,500원 - 변제금액 124,185,500원)의 광고대행료 채권이 존재한다.

C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1의 라.항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 원고를 참여시키기 위해 통모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계약 후 발행한 것이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원고의 광고대행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2013, 2014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5, 2016년 채권 중 미변제로 남은 채권 8,805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8,805만 원에 불과하다.

J 또는 C이 구미 P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통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변호사인 피고는 선의이다.

다. 판단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할 때,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333,965,500원 상당의 광고대행료 채권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4,185,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9,78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을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특히, 을 제15호증에는 갑
제7호증과 달리 J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 C에 직접 청구 안 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J가 경찰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가진
사실확인서에만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 그리고 C에서 ‘광고대행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C의 채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위해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한 이 사건
계약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원고를 해할 의사 또한
추정되거나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광고대행료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인 이상 2013, 2014년
발생분의 경우 3년이 경과하는 2016. 12. 17.부터 차례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고와 C이 2016년까지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하였고, 2016. 6. 30. 광고비로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갑 제11호증, 피고는 2016. 6. 30.자 광고비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과 C이 2020. 6. 8.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에서 그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2억 978만 원의 광고대행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끝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성균